



Korean Tax Newsletter

5 June 2026

CONTENTS

세무동향

- 국세청, 8 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합동 간담회 통해 세정지원 방안 제시
- 국세청,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예규판례

○ 법원

-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특법 제 5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부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 철회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조세심판원

- 모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단 시 개정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 19230 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과세 여부

○ 재정경제부

- 종업원 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 중견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 창업 후 3 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한도(연간 5 억원) 적용 여부
-

세무동향

국세청, 8 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합동 간담회 통해 세정지원 방안 제시

국세청은 '26.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 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5.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 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 의 7)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수도권 지방청(서울·충북·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
- 맞춤형 신고지원
 - 금년 6 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
 -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
-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 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국세청,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의 업무 외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법인 간 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및 사주 일가에 대한 부의 이전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5.2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법인 탈루유형

-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예규판례

[법원]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 두 35626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사안

원고가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4 조 제 3 항은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생산물'(제 1 호)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제 2 호)을 들고 있음 (…)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 고시 제 2024-2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분류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에서 '예식장업(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도매 및 소매업'(G)에 관해서는 '화초 및 식물 소매업(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아,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4 조 제 3 항은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원고와 고객 사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이 사건 꽃 장식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원고가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이 사건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식 당일 고객이 생화를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생화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 하에서도 어차피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 예식 이후의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고객이 해당 생화를 하객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 14 조 제 1 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2 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음 (…)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 14 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법원] 지특법 제 5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 두 32321 판결, 파기환송)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 168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 조의 2 제 1 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

■ 사안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위 지식산업센터 내 원고의 본점 면적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임대 면적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 사용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2 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피고가 위 본점 및 임대 면적에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위 본점 및 임대 면적을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가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며 재산세를 추징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및 문언,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 규정 전체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 28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본문에서 “산업집적법 제 28 조의 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1.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라는 요건이 선결적으로 충족되어야 함.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산업집적법상의 정의규정(제 2 조 제 13 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 4 조의 6 제 2 호는 ‘법 제 2 조 제 1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 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우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 4 조의 6 제 2 호에 명시된 ‘공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공장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됨 (…)

나아가 산업집적법 제 2 조 제 1 호는 ‘공장’을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 2 조 제 1 호는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등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사무실, 창고 등’을 부대시설로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장’의 정의와 범위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제 28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공장’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산업집적법 제 2 조 제 1 호의 법문에 따라 제조시설이 갖추어질 것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아야 함. 마찬가지로 ‘공장’의 정의 내에 규정된 ‘제조업’ 역시 공장 및 그 제조시설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도 앞서 본 '공장'의 요건 중 하나인 제조시설의 설치가 전제된다고 보아야 함 (...)

산업집적법이 2010. 4. 12. 법률 제 10252 호로 개정되면서 제 2 조 제 13 호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고, 그 용어의 뜻도 여러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바뀌었음. 그러나 이는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도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위 개정 전후로 '공장'의 개념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은 실질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 28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이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 두 34763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이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안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한 후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대금은 이 사건 차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받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대금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함(민법 제 506 조). 채무면제는 통상 적극재산 취득과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가시적인 소득창출은 없으나, 채무면제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함.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이익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 15 조 제 1 항, 소득세법 제 24 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 조 제 3 항 제 4 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 조 제 6 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는 본문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구 법인세법 제 52 조 제 2 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본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임.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그 주식 등을 발행한다면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담세력이 증가하게 됨.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을 채무면제액으로 포착하여,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이익과의 과세상 형평을 기하려는 데에 그 목적 및 취지가 있음

아울러 법인세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경위 및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법인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과 같이 추가로 과세특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것은 아님

[법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부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 철회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2 두 38199 판결, (일부)파기환송)

■ 쟁점

1.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 29 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제 1 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소극)
2. 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도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 사안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배당금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구 법인세법 제 18 조의 3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중 50%는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 1216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8 조의 3 제 1 항은 일정요건 아래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구 법인세법 제 18 조의 2 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본문 중 첫 번째 괄호 부분에서 구 법인세법 제 1 조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제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제 3 항은 제 1 항을 적용할 때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이어받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 조의 3 제 4 항에서는 위와 같은 특례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구 법인세법 제 29 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 법인세법 제 29 조 제 1 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즉, 구 법인세법 제 29 조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된 금액을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3 제 4 항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제외 대상인 '구 법인세법 제 29 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 29 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그와 같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제 1 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납세자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중 전자를 선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실제 산입한 이상,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조항들은 중첩 적용이 배제되는 '주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고유

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여전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익금불산입의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구 법인세법 제 29 조 제 1 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손금으로 보고,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 29 조 제 1 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지, 같은 법 제 18 조의 3 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할지는,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음. 그러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하여 이를 이미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겠다고 나중에 번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 29 조 제 1 항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사항으로 정한 취지에 반하여 법령상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이는 구 법인세법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나아가 납세자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이러한 소급적 철회를 내세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 168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 조의 2 제 1 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모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 부 4501, 2026.3.4., 기각)

■ 쟁점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000 등의 판매 및 렌탈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에 AA 주식회사(“쟁점피합병법인”)를 설립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출자 및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 청구법인은 2018.9.1. 쟁점피합병법인을 (무증자)흡수합병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쟁점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피합병법인 주식은 대체되는 자산 없이 소멸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000 원)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식을 전부 소각한 경우에 그 소각으로 인한 손익은 합병차손익에 포함된 자본거래라고 봄이 상당한바(서울고등법원 2012.2.3. 선고 2010 누 434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모회사)과 쟁점피합병법인(자회사) 간의 무증자 합병은 합병 후 신주(자기주식)를 할당하여 보유하다가 소각한 자본거래의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 17 조에서도 합병으로 인하여 자본에 변동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쟁점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쟁점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쟁점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쟁점피합병법인 주식은 대체되는 자산 없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단 시 개정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 19230 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과세 여부

(조심 2026 지 0313, 2026.4.7., 기각)

■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BBB 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23.10.25. AAA 주식회사(이하 “AAA”)로부터 BBB 주식회사(이하 “BBB”)의 발행주식 전부인 000 주(이하 “이 건 주식”)를 취득하여, BBB 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BBB 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 19230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7 조 제 5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BBB 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양도한 AAA 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AA 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과 제 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 7 조 제 5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 제 5 호 및 제 2 항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제 4 항과 달리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은 AAA 발행주식의 100 분의 49.32 를 출자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AA 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 제 5 호 및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청구법인은 2023.3.14. 법률 제 19230 호로 「지방세법」 제 7 조 제 5 항이 개정되기 전부터, AAA 발행주식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AAA 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과 제 4 항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부칙」 제 3 조에서 「지방세법」 제 7 조 제 5 항 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3.3.14.) 이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3.10.25.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 7 조 제 5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 제 5 호 및 제 2 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AAA 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BBB 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정경제부] 종업원 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 2026.5.26.)

■ 질의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 35350 호로 개정된 것) 제 11 조 제 1 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판매가액과 시가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제 1 호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4 항에 따른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세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어 동법 제 29 조 제 4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및 계약·공급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5.29.)

■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 206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 21 조 제 5 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 20613 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 21 조 제 5 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제 21 조 제 5 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중견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5-법인-3076, 2026.2.6.)

■ 질의

2022 년, 2023 년에 중견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이 2024 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기업유형이 중견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중견기업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4년)의 법인세를 공제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23 년까지 중견기업이었고, 2024 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일반기업으로 기업유형이 변경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22 년과 2023 년에 중견기업 기준(청년 800 만원, 청년 외 450 만원, 공제기간 3 년)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 29 조의 7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세청] 창업 후 3 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한도(연간 5 억원)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322, 2026.3.26.)

■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 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한도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조특법 §6②⑬)

■ 사실관계

- 甲은 신청인은 ‘23.1.7. 서울에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3.9.26.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임
* ‘23.6.2. 업종코드만 변경함(전 743004 ⇒ 후 743002)
- 쟁점사업장은 ‘25.11.12.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음(이하 “쟁점확인”)
-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의 23 년, 24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5 조 제 4 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 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5 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제 13 항에 따라 감면한도(연간 5 억원)가 적용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34

jjkim@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